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0. 4. 13.(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홍섭]

【 목 차 】

1.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3.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4.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의안번호 제2010 - 18>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II. 제안이유

- 각종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임.

III.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2)
 - “8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당 1대로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 삭제

〈개정내용〉

구 분	현행(전용면적 60㎡ 이하)		개정(전용면적 60㎡ 이하)	
1가구당	총 가구수가 7가구인 경우 : 7가구 × 0.7대	5대	총 가구수가 7가구인 경우 : 7가구 × 0.7대	5대
	총 가구수가 8가구인 경우 : 8가구 × 1대	8대	총 가구수가 7가구인 경우 : 8가구 × 0.7대	6대

VI.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3. 19 ~ 2010. 3. 29)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없음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별표2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현행 법령상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확보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구수 대비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삭제”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거창군 총 인구 및 가구의 50% 이상(인구/62%, 가구/56%)이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 거창군은 2018년 10만인구 목표달성 계획으로 승강기밸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88고속도로확장사업, 출산율 제고정책 등 각종 사업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주거지역(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및 기존 주택의 증축·변경 등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번잡이 우려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 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18
----------	-----------

제출일자	2010. 4.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2).
 - 8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당 1대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는 단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3. 19. ~ 2010. 3.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란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 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 4. (생략)	(생략)	1. ~ 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u>다만,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대수를 적용한다.</u>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서 삭제>
6. ~ 7. (생략)	(생략)	6. ~ 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11. 5] [대통령령 제21811호, 2009.11. 5, 일부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권내의 군지역	기타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 「주차장법」 [시행 2009. 1. 7]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타법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9.7.7>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개정 2009.12.1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

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군별 현황

시·군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대중근린 생활시설	4. 단독주택	5. 다가구주택	6. 골프장 외	7. 기타 건축물	개정 일자
시행령 개정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50㎡초과150 ㎡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 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9. 12.14
창원시	시설면적 100㎡당 1대(중심상 업지역 80 ㎡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집회장경우 75㎡당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	" (중심지역 오피 오피스텔 75㎡ 당 1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 1대)	시설면적 250㎡당 1대	2006. 12.22
마산시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초과하 는 100㎡당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 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8. 7.21
진주시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2008. 5.30
진해시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75㎡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 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8. 9.26

시·군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재중근린 생활시설	4. 단독주택	5. 다가구주택	6. 골프장 외	7. 기타 건축물	개정 일자
통영시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 85㎡초과 100㎡이하 1대	세대당 1대 단, 전용면적 60㎡미만시 0.7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0인당1대) 관람장 (50인당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2009. 12.16
사천시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0인당1대) 관람장(50 인당1대)	시설면적 250㎡당 1대	2005. 7.15
김해시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숙박시설 150㎡당 1대 근린생활 시설200 ㎡당 1대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9. 9.25
밀양시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20㎡당 1대 단, 숙박시설 100㎡당 1대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50 인당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2008. 11.17
거제시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 100㎡당 1대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9. 10.12

시·군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제종근린 생활시설	4 단독주택	5. 다가구주택	6. 골프장 외	7. 기타 건축물	개정 일자
양산시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계획구역 150㎡당 1대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2010. 4.1
의령군	-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4대 이상 -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이상							2009. 11.25
함안군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85㎡초과 150㎡이하 1대	주거면적60㎡ 이하0.8대 60㎡초과85㎡ 이하0.9대 85㎡초과1.2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4. 11.18
창녕군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 100㎡당 1대	시설면적 100㎡초과 150㎡이하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0인당1대) 관람장(50 인당1대)	시설면적 250㎡당 1대	2005. 4.22
고성군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당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90㎡당 1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2008. 10.8
남해군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80㎡초과 150㎡이하 1대	전용면적 85㎡이하 1대 85㎡초과1.3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9. 7.10
하동군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전용면적 75㎡당 1대 (60㎡이하0.7대 이상)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9. 12.28

시·군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제종근린 생활시설	4. 단독주택	5. 다가구주택	6. 골프장 외	7. 기타 건축물	개정 일자
산청군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 1대	시설면적 120㎡당 1대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100 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2. 8.16
함양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2007. 2.14
합천군	-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00㎡초과 150㎡이하 1대(다가구주택 제외)							2009. 3.6
거창군 (현행)	시설면적 80㎡당 1대	주거 및상업: 120㎡당 1대 기타 : 150㎡당 1대	주거상업 150㎡당 1대 기타 200㎡당 1대	시설면적 100㎡초과 150㎡이하1대 150㎡초과: 1대에150㎡ 초과하는 100㎡당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8가구 이상시 가구당 1대중 많은 것.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 (100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2008. 7.11
거창군 (개정안)	시설면적 80㎡당 1대	주거 및상업: 120㎡당 1대 기타 : 150㎡당 1대	주거상업 150㎡당 1대 기타 200㎡당 1대	시설면적 100㎡초과 150㎡이하 1대 150㎡초과: 1대에150㎡ 초과하는 100㎡당1대 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u>※ 단서조항</u> <u>삭제 : 8가구</u> <u>이상시 가구당</u> <u>1대중 많은 것.</u>	1홀당 10대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15인당1대) 관람장 (100인당1대)	시설면적 300㎡당 1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

II. 제안이유

-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창군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임.

III.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09.8.13)에 따른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명문화(안 제 6조의2)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09. 12. 30. ~ 2014. 12. 30.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위촉원으로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안 제9조 단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

VI.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6조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등 실물경제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동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	--------

제출연월일	2010. .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신설하여 명시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8.13개정, 시행 2009.10.2)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율함에 있어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
(안 제6조의2 신설).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함
(조례 제정·시행일(2009.12.30)부터 5년간)

나.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
(안 제9조 단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생략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생략)</p> <p><신설></p>	<p>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임기) ----- -----.</p> <p>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09.10. 2] [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13,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II. 제안이유

-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온 발생과 국가 간 FTA협상 등으로 인하여 일부농산물을 제외한 다수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또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 현행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III. 주요내용

- 제명변경: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명)

- 조례의 설치목적 확대규정: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및 기금조성 금액 상향 조정, 군 출연금 출연금액 및 방법 규정(안 3조)
 - 기금의 설치근거: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
 -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 → 200억원
 - 군 출연금액 방법: 10억원(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2019년 12월 31일까지(안 제3조의2 신설)
- 기금의 용도 규정: 농업인등에 대한 용자 및 보조사업(안 제3조의3 신설)
- “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으로 세분화 규정(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위탁근거 및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사용근거 마련(안 제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안 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용자재원 및 대출”을 “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으로 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재원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 용자재원: 금융기관 지원자금 → 기금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 기관의 자금으로 충당
 - 기금지원 보조사업: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밖의 수익금으로 지원
- 용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 범위 및 보조대상 사업범위 확대 (안 제8조)
 - 대상자: “농업인”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단체(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 용자대상사업 추가: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
 - 보조대상사업 추가: 경영안정대책비, 생계안정을 위한 경영유지비
- “감독과 명령”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하고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함(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맞춰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VI.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12조의2, 제112조의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
- 나. 예산조치: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전출금)/10억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3. 9 ~ 2010. 3. 28)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없음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또한 이상기온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도모를 위하여 기금조성액을 상향 조정(100억원 → 200억원)하고, 보조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안 제2조의 내용 중 현행 지원대상인 “농업인”의 한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한 것은 모든 농업인 등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하는 건에 대하여는 기금에 대한 보조사업지원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 조성한 기금의 집행실적으로 보면 총액 97억 4,500백만원중(이자수입 301백만원) 용자금 이자 1억3,800백만원과 농업재해보험료 1억6,200백만원 등 총 3억원만 지출되었음. 이는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만 지출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 100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문화 하고, 안 제3조의3 기금의 용도를 정비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용자금의 지원 및 회수,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의 관리업무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사용 근거를 새로이 정비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의2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용자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재원, 경영안정 대책비, 경영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안 제6조(기금운용계획), 안 제7조(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 안 제8조(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 안 제9조(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안 제10조(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통보), 안 제11조(융자 및 보조지원 조건), 안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안 제13조(융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안 제14조(사후 관리), 안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안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확대의 폭을 넓히고,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용어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20
----------	-----------

제출연월일	2010. 4.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최근 농업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농업재해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농업 경영안정 시책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현행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농업전문인력 육성’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제명,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조성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 중 군 출연금의 출연 금액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설치 :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 → 200억원

○ 군 출연금 출연 금액 및 방법 :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함

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명시함)(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기금의 용도 명시 : 농업인등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및 보조사업에 사용

마.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의 일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정비 내용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아. 기금의 융자사업 재원과 보조지원 대상사업의 재원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기금에서 융자하는 재원은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
-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함

자. 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농업인 외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융자 및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 융자대상 사업 추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
- 보조대상 사업 추가 :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

차. 용자대상 사업에 대한 용자금 지원 한도액,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일반적인 용자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한도,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용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12조의2, 제112조의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전출금) : 10억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3. 9. ~ 2010. 3.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
5. “농업재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업인등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및 보조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자금의 용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기금에서 융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 심의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이차보전”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기타 심의회”를 “그 밖에 위원회”로 한다.

① 제7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

③ 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4.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중 “제9조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출기간”을 “용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한도,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용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자보전 방법”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용자한 경우에는 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자보전 재원”을 “이자차액 보전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자를 받은 자가”를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이”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간”을 “상환기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금융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용자 받은 가구와 금융기관”을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과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을 “상환통지를 받은 농업인등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금융기관”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를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기금관리수탁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 농업인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p> <p>가. 후계농업인, 후계임업인</p> <p>나. 전업농, 독농가</p> <p>다. 농·축·임업생산자 단체</p> <p>2. 지역명품</p> <p>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p> <p>3. 재해농가</p> <p>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p> <p>에 의한 피해농가</p> <p>나. 기타 거창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p> <p>위원회에서 재해농가에 해당된다고</p> <p>결정된 농가</p>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
	목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p>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p>	<p>5. “농업재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p> <p>6.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p> <p>7.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p>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제3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용자 및 보조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거창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 확보 등 기금용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국채, 공채, 유가증권 매입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기금 증식사업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보조지원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 <p>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농업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p>	<p>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p> <p>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p>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p> <p>2.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대상자 선정</p> <p>3. 기타 기금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p> <p>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p> <p>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자금의 용자계획</p> <p>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용자재원및대출) ① 농업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용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으로 용자금을 대출한다.</p> <p>② 연간 대출 용자금액과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결정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기금에서 용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p> <p>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p> <p>① 제7조에 의한 용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u>농업인</u>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사업</p> <p>2. ~ 5. (생략)</p> <p><신설></p> <p>6.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p> <p>② (생략)</p> <p>③ 기금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생략)</p> <p>2. 제1항에 의한 용자대상 사업에 지원된 용자금의 <u>이자보전</u></p> <p><신설></p> <p><신설></p> <p>3.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p>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p> <p>① 제7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용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농업인등</u>-----</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농산물가격안정자금 지원사업</u></p> <p>7. <u>그 밖에 위원회</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항에 따른 -----</p> <p>----- <u>이자차액 보전</u></p> <p>3. <u>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u></p> <p>4. <u>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u></p> <p>5. <u>그 밖에 위원회</u>-----</p> <p>---</p>

현행	개정안
<p>제9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① 용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② 기금의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제9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①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② ----- 위원회-----.</p>
<p>제10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통보) 군수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자 통보) --- 제9조에 따른 ----- ----- 금융관리수탁기관-----.</p>
<p>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생략)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 2. (생략) <신설></p> <p>③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본인부담 보험료 보조지원 규모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지원사업등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p>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용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 각 호-----.</p> <p>1. ~ 2.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 피해 복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한도, 대출 및 상환기간 등 용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④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이자보전 방법) ① 군수는 <u>용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u>을 지원한다.</p> <p>② <u>이자보전 재원</u>은 기금 이식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p> <p>③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 ---- <u>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용자한 경우에는 용자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금</u>-----.</p> <p>② <u>이자차액 보전재원</u>-----.</p> <p>③ <u>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u>으로 정한다.</p>
<p>제13조(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① 군수는 <u>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5. <u>기타 금융기관의 요청 등 용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u></p> <p>② <u>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u> 군수는 <u>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 <u>용자 받은 가구와 금융기관에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13조(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① -- <u>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이 -- 각 호의 어느 하나</u>----- 상환기일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기금관리수탁기관</u>-----.</p> <p>② <u>제1항에 따라</u> ----- <u>위원회</u>----- <u>용자를 받은 농업인등과 기금관리수탁기관</u>----- <u>상환통지를 받은 농업인등은</u> -----.</p>
<p>제14조(사후관리) 군수와 <u>금융기관의 장은</u> 필요한 경우 <u>용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용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4조(사후관리) --- <u>기금관리수탁기관</u>----- <u>용자를 받은 농업인등</u>-----.</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감독과 명령) 군수는 기금적립 및 용자금 취급협약을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용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기금관리수탁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 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회계관리)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2. 제12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3.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④ 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준용)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p>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의 절차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의 예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 농어업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구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자조김)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 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병충해(病蟲害),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①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년 4월 5일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년 4월 7일

II. 제안이유

- 상수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 자재를 종전 관급품에서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자재로 규정하는 등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및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발굴

III. 주요내용

-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고, 관급 자재의 범위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 토록 개정(안 제2조제2항)
- 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않는다. 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제3항)

- 수도공사의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로 개정(안 제8조제5항)

VI.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수도법」 제18조 제2항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25. ~ 2010. 2. 16.)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없음

IV.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관급품 시공자재에 대하여는 검사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2007.9.6 전부개정 전>

제18조의2(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개정 2006.6.29>)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2006.6.29>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9.29, 2006.6.29>
- [본조신설 1998.2.24]

<2007.9.6 전부개정 이후 현행>

제30조(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
규제개혁 추진

2009. 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1. 추진배경

- 우리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예규·고시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원리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경쟁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광역) 조례·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용역기간 : 2007. 6. 5.~11. 4.)” 결과를 토대로 총 6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33개의 과제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함

2. 기초 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 2008년도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용역기간 : 2008. 6.26.~11.25.) 실시
-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9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샘플링하여 이중 경쟁을 제한하는 14개 규제에 대하여 “개선 또는 폐지”의견 제시
- 우리위원회는 14개 규제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11개 규제에 대하여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 추진

붙임 : 기초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2009. 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목 차

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1
2. 시장사용자에 대한 영업허가	4
3.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6
4. 수강료 반환규정 미흡	8
5.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미흡	10
6.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13
7. 건축물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건축사협회의와 협의	14
8. 관할 지역 내 업체의 우대	16
9. 분노처리업의 지역제한	18
10. 건인대행업의 지역제한	19
11.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20
12. 금융지원기회 차별	22
13. 관내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또는 지원	24
14. 특정시장에 대한 차별적 취급	26

11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

□ 규제내용

-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함

□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 상위법령 : 수도법 제38조
- 관련조례 : 각 기초 자치단체 수도급수 조례 (例示)

제 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 관련지자체 근거법령 (例示)

- 1)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
- 2) 여주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
- 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조례 제8조
- 4)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
- 5)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 6)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 7)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 8)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 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 10)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 11)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 12) 마산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7조

□ 검토의견 : 폐지

- 급수공사에서 관급자재에 의한 품질의 일원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충분하지만 관급자재가 반드시 품질과 가격에서 일반자재보다 우수한 것은 아니며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품질과 가격에서 관급자재보다 뛰어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
- ⇒ 자재업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동 내용은 “삭제 또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초자치단체 모범조례(例)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6. 관급자재 우대

전라북도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18조2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조례1700>

③삭제 <2001. 4. 24 조례1700>

④급수공사는 공사 승인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4. 24 조례 1700>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4. 24 조례 1700>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공사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 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할 수 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1.1.14)